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6,444호(1999. 6. 30) -

농림부는 1999. 1. 21 법률 제5667호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제16444호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제정, 99. 7. 1 시행한다.

동법은 그동안 1993. 6. 11 제정·시행하던 농수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보완규정하였다.

동시행령에 규정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고 전문을 소개한다.

1.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을 50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업협회가 지명한 협회 직원을 위원중 포함함(영 제3조 내지 제9조).
2.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상품성·일정기준 이상의 품질 등을 갖춘 농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여 줄 수 있도록 품질인증기준을 정하는 한편,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영 제12조 내지 제14조).
3.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 줄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및 절차를 정함(영 제15조 내지 제18조).
4. 유통중에 있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을 조사하여 규격이 미달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정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영 제19조).
5.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의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용도전환 등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0조 내지 제22조).
6.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는 함량표시를 삭제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7.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을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하고 표시기준을 규정함(영 제26조 및 제27조).
8. 검사대상인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입하는 농산물 등으로 하고, 부적격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0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범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이하 "농산물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소속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마.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농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수산물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수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 위원장은 해당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회의록을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가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설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각각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농산물심의회, 수산물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농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당해 농수산물의 품질등급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중간등급 이상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중간등급 이상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중간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3. 당해 농수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4.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14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2. 품질등급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어야 한다.
3.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5.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 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성조사의 기본 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저장창고, 도매시장,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다.

②생산·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수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3. 출하단계조사는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③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

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어장·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수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하고, 국산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다만,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3. 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등의 원산지표시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원산지의 판정기준) ①국산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군명을 표시하는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군을 그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야생 동·식물의 경우에는 당해 동·식물이 포획 또는 채취된 시·군을 말한다.
 2. 해역명을 표시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이 생산된 해역을 그 원산지로 할 것
- ②수입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수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1. 기존의 농수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2.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수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3.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7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이라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을 포함하고 있는 농산물등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이라고 표시.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농산물등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특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이라 표시하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이라고 표시.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수산물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특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

류, 잡사류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②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고 및 점검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제31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3.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
 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3조제2항, 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하되, 가공업자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제외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5.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임산물 및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등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검정

1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표준
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품질인증기
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5.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
물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과 이의 생산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
치(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의 조사 및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제외한다)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그 가공
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
형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8.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검정

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패
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의 조사·시료수거 등
및 그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의 권한을 국립수산진
흥원장에게 위임한다.

⑥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
산물검사소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시행령은 이
를 폐지한다.

제3조(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별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 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 의회의 구성)”을“(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 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 회”로, “30인이내”를 “20인이내”로 하며, 동조제3 항제2호마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 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 심의회의 구성)”을“(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산물가공산업육 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 회”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다목중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5인이하”를 “10인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산지가공 지원대상자의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전통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 한 전수교육을 이수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제16조제3항중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8조·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곡류·채소류·과실류등”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중”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를 “품질 인증을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 며, 동조제4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34조·제37조 내지 제40조·제41조 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 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자금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호나 목 내지 라목, 동항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 제하며, 동항제2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 중 “농림축산특산물”을 “특산물”로 하고, 동항제3 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 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다음 각목의 권한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가목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를 “농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및 인증품관리” 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 및 동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대의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 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 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19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

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 행정 처분 대상 | 근거법령 | 행정 처 분 기 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법 제11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 (2)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때 | 법 제11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 (3)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표시정지 6월 |
| (4) 당해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6월 | - | - |

나. 품질인증품

| 행정 처 분 대 상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법 제11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인증취소 |
| (3)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3월 | 인증취소 | - |
|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 법 제11조 | 인증취소 | - | - |
| (5)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법 제11조 | 인증취소 | - | - |

다. 지리적특산품

| 행정 처분 대상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법 제11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등록취소 |
| (3)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11조 | 표시정지 3월 | 등록취소 | - |
| (4)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 법 제11조 | 등록취소 | - | - |
| (5)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때 | 법 제11조 | 등록취소 | - | - |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제28조제2항관련)

| |
|--|
| <p>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p> <p>가. 곡 류 : 벼·결보리·쌀보리·콩</p> <p>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p> <p>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p> <p>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p> <p>마.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p> <p>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p> <p>가. 곡 류</p> <p>(1) 조 곡 : 콩·팥·녹두</p> <p>(2) 정 곡 : 현미·쌀</p> <p>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p> <p>다. 채소류 : 마늘·고치·양파</p> <p>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p> <p>곡 류 : 현미·쌀·보리쌀</p>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 태 료 금 액 |
|---|---------------|-----------------|
| 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300만원 |
| 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 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점검 또는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 마.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800만원 |
| 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사.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국산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등

(1)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당해 물품의 판매 장소에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국산 도매가격은 인근 법정도매시장이 공시한 당해품목의 중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도매가격이 없는 때에는 당해 품목의 당해 업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 (2)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 (나) 과태료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

고, 5만원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 나. 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 (1)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가)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준액(연간매출액) | 과태료부과금액 (만원) | 기준액(연간매출액) | 과태료부과금액 (만원) |
|-----------------------|-----------------|-------------------------|-----------------|
| 100백만원 미만 | 30 | 1,000백만원 이상 1,200백만원 미만 | 500 |
|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 | 50 | 1,200백만원 이상 1,400백만원 미만 | 600 |
| 20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 | 100 | 1,400백만원 이상 1,600백만원 미만 | 700 |
| 4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미만 | 200 | 1,600백만원 이상 1,800백만원 미만 | 800 |
| 60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미만 | 300 | 1,800백만원 이상 2,000백만원 미만 | 900 |
| 8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 400 | 2,000백만원 이상 | 1,000 |

- 1)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신규영업,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 3) 1개업소에서 2개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

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나)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가(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 (나) (가)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